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0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 경, 김기덕,
김성준, 김영철, 민병주,
박강산, 박 석, 박수빈,
서준오, 송도호, 신복자,
오금란, 유정인, 유정희,
이민석, 이민옥, 이소라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임규호, 임종국, 최재란,
한 신, 홍국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건축법 개정('24. 6. 18.)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50%에서 75%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,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75%로 상향 조정함(안 제45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축법 제80조의2,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4항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7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<u>100분의 50</u>으로 한다.</p> <p>⑤~⑦ (생략)</p>	<p>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7</u> 5로 한다.</p> <p>⑤~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·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감경비율(100분의50 →100분의 75)을 상향하는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(구청장)¹⁾가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
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